

재산세 [과세대상] 변동신고서					처리기간
					즉시
납세의무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-	
	주소				
		(연락처:)			
재산소재지	(부동산등기부상 지번표시) 일산동구 동 번지(건물명:) 동 호				
변동사유	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				
용도	건축물대장 / 부동산등기부	사무용(업무용)오피스텔	사실상현황	주거용	
실거주자	성명		주민등록 전입여부	☐ 전입 신고함 ☐ 안함	
「지방세법」 제1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세 [과세대상]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.					
※ (유의 사항)					
▶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,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					
▶ 또한,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소유한 기존주택이 재산세 1세대1주택 세율특례가 적용된 경우 이 건 변동신고로 1세대1주택 세율특례에서 제외되어 재산세가 증액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
2026 년 월 일					
신 고 인: (서명 또는 인)					
납세자와 관계:					
고양시 일산동구청장 귀하					
※ 첨부서류 1. (공통)납세자 신분증 사본 (대리인 신고시: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) 2. 임대한 경우: 임대차계약서 사본 3. 전입신고 안 된 경우: 입증사진 필요[현관(호수 나오게), 방, 거실, 주방 등]				전산입력 확인	
※ 사업자등록이 된 오피스텔은 주거용 변동신고 제외대상입니다. ※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해 현황과세로 『주택 세율』을 적용합니다. ※ 신고한 내용의 과세적용은 신청일(연도) 이후부터 재산세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					
우편: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, 일산동구청 세무과(주택재산팀) 팩스: 031-8075-9876, 연락처: 031-8075-내선번호 담당(내선번호): 백석1동·장항2동(6124), 풍동·장항1동(6123), 백석2동·식사동(6122), 정발산·중산동(6121)					